

## [추경]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요강 요지

구 분	(추경)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
지원대상	순제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실사 장편 극영화(60분 이상) ☞ 한국영화 위기극복 일환으로 '26년 추경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'㉠'구간(순제작비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) 신설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 지원대상 영화 중 아래 1) ~ 4)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</li> <li>1) <b>메인투자 계약서:</b> 위원회 지원신청시 기 체결된 메인투자배급 계약서(메인투자배급 계약서(공동메인투자배급 계약서 포함) 또는 별도의 메인투자 계약서와 배급 계약서) 사본을 제출해야 함</li> <li>2) <b>메인투자 확약서:</b> 위원회 지원확정시 반드시 메인투자배급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(메인투자배급 확약서 또는 별도의 메인투자배급 확약서와 배급 확약서) 사본을 제출해야 함</li> <li>3) <b>메인투자 의향서:</b> 위원회 지원확정시 메인투자배급 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의향서(메인투자배급 의향서 또는 별도의 메인투자 의향서와 배급 의향서) 사본을 제출해야 함</li> <li>4) <b>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약서 또는 의향서:</b> 제작사가 메인투자자로서 총제작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위원회 지원확정시 총제작비 조달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부분투자 계약서(확약서 및 의향서 포함), 용자 계약서(확약서 및 의향서 포함), 배급 계약서(확약서 및 의향서 포함) 등으로 구성된 총제작비 조달 계약서나 확약서 또는 의향서)를 제출해야 함</li> </ul>
신청자격	•신청인 기준: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(장편 실사 극영화 제작 1편 이상 보유 必)
참여 연출자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연출자 기준: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나 장편 실사 극영화(OTT 영화 또는 시리즈물 포함) 1편 이상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</li> <li>•신인감독 기준 : 단편영화 연출 경력만 있거나 장편 실사 극영화(OTT 영화 또는 시리즈물 포함) 1편 이하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</li> </ul>
지원총액	26,000백만원, 제작지원금: 25,860백만원(사업관리비: 140백만원)
지원편수 및 편당 지원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㉠군: 순제작비 20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 작품(9편 내외)</li> <li>•㉡군: 순제작비 3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 작품(6편 내외)</li> <li>•㉢군: 순제작비 60억 원에서 100억원 미만 작품(3편 내외)</li> <li>•㉣군: 순제작비 100억 원에서 150억원 미만 작품(2편 내외)</li> </ul> <p>※ 선정 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내지 영화진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※ 편당 지원금액은 순제작비의 40% 혹은 25억 원(단, ㉣군은 30억 원)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(차등지급)</p>
지원 신청편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당 최대 1편</li> </ul> <p>* 영화제작업자(보조사업자) 당 최대 1편에 한함(단, 타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공동제작작품 1편에 한해</p>

	<p>공동제작사로 참여 가능). 신청 제작사가 다르더라도 제작사 대표가 동일인인 경우도 1편까지만 신청 허용.</p> <p>* 결정심사 단계에서 영화제작업자 1인이 신청한 1편의 메인 제작작품과 타 영화제작업자 1인이 신청한 다른 1편의 공동제작사로 참여한 공동제작작품 모두가 최종 지원작 선정 편수에 포함될 경우, 2편 모두 지원 가능</p>
<b>신인감독 쿼터</b>	<p>• 2026년 추경사업 최종 지원 확정작품의 최소 <b>30% 이상</b> 범위에서 선정</p> <p>* 다만, 메인투자계약 체결 기한(1단계: 지원작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, 2단계: 2026년 11월 16일, 3단계: 2026년 11월 30일)까지 총제작비조달계약(메인투자배급계약 등) 체결 불발시 해당 비율(30%)은 축소될 수 있음.</p>
<b>국제공동제작 쿼터</b>	해당사항 없음
<b>지원조건</b>	<p>• &lt;1단계&gt; 지원약정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메인투자배급 계약 체결(메인투자배급계약서 사본 제출) 내지 총제작비에 대한 개별 조달(투자 및 배급)계약 체결(위원회 지원금(보조금)을 제외한 공동메인투자계약서, 부분투자계약서, P&amp;A 비용 투자계약서 등 총제작비 전체 조달을 증명하는 계약서 전체 사본 및 배급(대행) 계약서 사본 제출)이 확정된 선정작에 한해 부속합의 약정체결 및 2026년 12월 7일까지 제작 착수계 제출 조건</p> <p>• &lt;2단계&gt; 위 &lt;1단계&gt;를 거쳐 부속합의 약정을 체결한 결과가 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'26년 추경사업 선정 작품수에 미달할 경우 지원약정 체결 1개월 이후부터 2026년 11월 16일까지 부속합의 미체결 지원확정작과 지원 예비후보작에 대해 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&lt;㉠군&gt;~&lt;㉣군&gt;의 지원선정 편수 범위 내에서 군별 공문(총제작비 조달계약을 보증하는 계약서 일체 포함) 제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부속합의 약정체결 및 2026년 12월 7일까지 제작 착수계 제출 조건. 단, &lt;㉣군&gt; 최종 지원편수는 2편 이내로 제한.</p> <p>• &lt;3단계&gt; 위 &lt;1단계&gt;를 거쳐 부속합의 약정을 체결한 결과가 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'26년 추경사업 선정 작품수에 미달할 경우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&lt;㉠군&gt;, &lt;㉡군&gt;, &lt;㉢군&gt; 공고 선정편수를 구분하지 않고 공문(총제작비 조달계약을 보증하는 계약서 일체 포함) 제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부속합의 약정체결 및 2026년 12월 7일까지 제작 착수계 제출 조건.</p> <p>• 약정체결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제작완성</p> <p>• 약정기한(약정체결 후 2년) 내 극장개봉 의무</p> <p>☞ (유의사항) 위 &lt;2단계&gt;에서 &lt;3단계&gt;를 거치는 동안 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&lt;㉠군&gt;~&lt;㉣군&gt;의 지원선정 편수 범위 내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, 마지막 순위 작품의 최종 지원금액은 선순위 지원확정작의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음. 따라서 마지막 순위 작품의 최종 지원금액은 결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 예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.</p>
<b>선정기준</b>	<p>• 심사는 1차 예비심사(서류 심사) 및 2차 결정심사(예비심사 통과작품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) 2단계로 진행함.</p> <p>- 1차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지원신청자의 신청서류에 대해 추경사업 심사운영세칙에 의한 예비심사 평가항목(신청작품의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목적 부합성, 총제작비 조달계약 체결 가능성 등)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차 결정심사에 회부</p> <p>- 2차 결정심사 단계에서는 1차 예비심사 통과작 및 '26년 본예산 지원예비후보작 22편 중 '지원대상'의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작품의 신청서류에 대해 추경사업 심사운영세칙에 의한 결정심사 평가항목(신청작품의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목적 부합성, 총제작비 조달계약 체결 가능성 등)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</p>
<b>선정방식</b>	<p>• 별도의 전문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</p> <p>▲ (1차 예비심사) 조별 5인으로 구성되는 N개의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조별 20편 내외</p>

	<p>의 예비심사대상 작품을 각각 평가하여, 2026년도 추경사업 최종 선정편수의 2배수 내 외의 작품을 선정 후 2차 결정심사에 회부. 단, 결정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각 부문별 작품 편수는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.</p> <p>▲ (2차 결정심사) 총 9인 이내로 구성되는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작 및 예비후보작 결정</p> <p>- 예비심사위원회에서 회부한 2026년도 추경사업 최종 선정편수의 2배수 내외 예심 통과작 및 2026년 본예산 지원 예비후보작 중 신청 조건을 갖춘 후 지원 신청한 작품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(프리젠테이션)를 거쳐 선정작 및 예비후보작 선정</p> <p>▲ (부속합의약정체결을 통한 순제작비 및 최종 지원금액 확정)</p> <p>- &lt;1단계&gt; 당해년도 지원 확정작에 대한 지원약정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메인투자배급 계약 체결(메인투자배급계약서 사본 제출) 내지 총제작비에 대한 개별 조달(투자 및 배급)계약 체결(위원회 지원금(보조금)을 제외한 공동메인투자계약서, 부분투자계약서, P&amp;A 비용 투자계약서 등 총제작비 전체 조달을 증명하는 계약서 전체 사본 및 배급(대행) 계약서 사본 제출)이 확정된 선정작에 한해 부속합의 약정체결 및 순제작비 및 최종 지원금액 결정</p> <p>- &lt;2단계&gt; 위 &lt;1단계&gt;를 거쳐 부속합의 약정을 체결한 결과가 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'26년 추경사업 선정 작품수에 미달할 경우 지원약정 체결 1개월 이후부터 2026년 11월 16일까지 부속합의 미체결 지원확정작과 지원 예비후보작에 대해 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&lt;㉞군&gt;~&lt;㉠군&gt;의 지원선정 편수 범위 내에서 군별 공문(총제작비 조달계약을 보증하는 계약서 일체 포함) 제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부속합의 약정체결 및 순제작비 및 최종 지원금액 결정. 단, &lt;㉠군&gt; 최종 지원편수는 2편 이내로 제한.</p> <p>- &lt;3단계&gt; 위 &lt;2단계&gt;를 거쳐 부속합의 약정을 체결한 결과가 결정심사위원회 통해 확정된 '26년 추경사업 선정작품수에 미달할 경우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&lt;㉞군&gt;, &lt;㉠군&gt;, &lt;㉠군&gt; 공고 선정편수를 구분하지 않고 공문(총제작비 조달계약을 보증하는 계약서 일체 포함) 제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부속합의 약정체결 및 순제작비 및 최종 지원금액 결정</p>
<p><b>접수 기간</b></p>	<p><b>2026. 6. 16.(화) ~ 6. 30.(화), 16:00까지</b></p>
<p><b>공통 사항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지자체 지원금 사용 내역은 사업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포함하고,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시 위원회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별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필수</u></li> <li>•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타 국고사업 지원금은 중복 수혜 불가</li> <li>•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진행중인 작품은 신청 불가</li> <li>• 아래 해당하는 작품은 신청이 불가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일 현재 기준, 과거 위원회에서 시행한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작품</li> </ul> </li> <li>• 아래 해당하는 신청인 및 연출자는 신청이 불가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"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"과 동일한 작품으로 신청한 경우</li> <li>-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신청작품으로 위원회 기획개발지원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제작사(대표자) 및 연출자. 다만, '26년 지원작 확정일 이전에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</li> </ul> </li> </ul>

완료 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- 신청일 현재 **다른 신청작품**으로 위원회 기획개발지원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**연출자**. 다만, '26년 지원작 확정일 이전에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 완료 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- 신청일 현재 **다른 신청작품**으로 위원회 제작지원(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,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)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**연출자**. 다만, '26년 지원작 확정일 이전에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 완료 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-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

-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 인 경우

- 신청사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